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단체안심상해보험 상품설명서



//예금자보호 아이콘 : 1) 계약자가 개인인 경우 : 보호아이콘 2) 법인인 경우 : 비보호 아이콘

000님을 위한 상품설명서

본 상품은 소멸성 순수보장성 보험이며,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이고, 보험계약 만기시 지급받는 금액(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 예금자보호문구 가변 //

// 1) 계약자가 개인인 경우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2)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실제손해액에 기초하여 보상하므로 중복가입 경우에는 보험금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합니다.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주) 한국지점

MSIK-UA1-R002
2025년 09월 01일

가. 보험계약의 개요

- ☐ 보험회사 :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주) 한국지점
☐ 모 집 자 : 아유이afasd (연락처 99-123-4567)
☐ 기본계약 보험기간 : 1311. 1. 1. 부터 132012. 1. 2. 까지
☐ 보험상품명 : 상해보험
☐ 보험계약관계자
 ■ 보험계약자 : 13ABCD 주식회사
 ■ 피보험자 : 13보험계약자의 임직원 등 (남/여, ○)
 ■ 보험수익자(사망시): 13법정상속인 또는 지정인 (임직원별 지정인은 추후통지)
☐ 보험료: 13 923,456 원 (납입방법: 13 예치/만료후 정산)
☐ 보험계약 주요 체결내용

※ 상세 사항은 요율견적서(Rate Quotation), 청약서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담보명	지급 사유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기본 계약	상해사망 / 후유장해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사망,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9	3
선택 계약	업무중 상해사망 / 후유장해	업무중에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사망,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8	4
	과로사	업무중에 과중한 업무부담의 지속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심질환으로 돌연히 사망한 경우	7	5
	질병입원일당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에 대하여 일당액을 지급	6	6
	24시간 상해입원일당	상해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에 대하여 일당액을 지급	5	7
	수술비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의 수술비	4	8
	질병사망	보험기간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또는 80%이상의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3	9

※ 특약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기본계약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약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갹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특약의 가입내역은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의무

[보험계약자의 권리]

① 보험계약 청약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절차 및 방법】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1) 아래 주소지로 우편 송부하시거나, 2)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 또는 당사 한국지점(☎ 02-3702-5800)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청약철회 신청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wo IFC 7층 (07326)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주) 한국지점

(전화:3702-5800)

②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1. 보험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2.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3.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의무]

①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 *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료 납입의무, 납입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독촉기간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직업 또는 직무 변경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 보험료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후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 추가납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업·직무 변경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는 사례 예시]

- 회사원 A씨는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으로 직무가 전환된 후, 작업 중 기계에 손을 다치는 사고 발생
 - B씨는 보험가입 당시 사무직으로 직업을 고지하였으나, 이 후 농업종사자로 직업을 변경 한 후 농기계 운전 중 사고 발생
 - 무직자였던 C씨는 상해보험 가입 몇개월 후부터 생계를 위하여 택시운전기사로 일하던 중에 교통사고 발생
 - 고등학생인 자녀D에 대해 상해 보험을 가입하였으나 이 후 체육 특기생으로 변경 된 후 상해사고 발생
- ※ 상기 예시는 직업·직무급수 변경 여부, 가입 담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직업·직무 변경 통지의무 적용제외 사례 예시】

- E씨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

①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한(서명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되며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계약의 해지사항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5 -

- [상해에 관한 사항]

- [인보험에 관한 사항]

- [보험나이]

- [보험금 지급관련 면책에 관한 사항]

☐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과로사

- ### (3) 질병 입원 일당

9. 위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비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 피보험자가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시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일당액을 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에 더하여 계산합니다.

□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마.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계약자, 납입자가 개인인 경우]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모집자나 당사
한국지점(02-3702-58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ms-ins.co.kr) 또는 손해보험협회
상담센터(02-3702-8500)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8 -

⑧ 보험가입내역 조회서비스에 관한 사항

보험 가입자가 본인의 보험가입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보험수익자 또는 유족(이하 "보험가입자 등")이 사망자의 보험가입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 등은 보험가입내역을 **손해보험협회** 또는 **생명보험협회**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조회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손해보험협회 또는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 ▶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 세부 내용은 손해보험협회 또는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⑨ 보험계약 사전조회

- ☐ 실손의료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보험 계약여부 확인방법

- ① 공인인증서 보유시 한국신용정보원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에서 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 ②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보험 계약정보 조회 요청

※ 의료비 보험계약 사전조회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항목이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4가지로 제한 됩니다.

⑩ 기타 유의사항

- ☐
- 교차모집 관련 유의사항

교차모집의 시행으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거나,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이 해당회사의 상품이 맞는지 또는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보험설계사의 성명이 실제 모집한 보험설계사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설명 확인 문안

■ 금융정보취약계층(만 65세 이상인 자, 은퇴자, 주부 등)에 해당하시고 그 정보를 제공하기로 동의하신 고객께서는 '예금보험관계 성립여부 및 보호한도'에 대해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다음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시겠습니까? (v 체크)

☐만65세 이상 ☐은퇴자 ☐주부 ☐예금보험관계 우선 설명 요청 고객

② 예금자보호여부 및 보호한도[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1억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설명 들으셨습니까?

고객명 :

서명 또는 (인)

※ **예금보험관계 우선 설명 요청 고객**이란, 모집인 등의 별도 안내 없이 고객(계약자)가 '예금보험관계 성립여부 및 보호한도'에 대해 우선적 설명을 추가로 요청한 경우에 한함.

